

-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·예산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·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 소양을 갖고 자율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예산군의회 동의의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위탁시설	위탁내용	운영방식	최초위탁일	위탁기간(예정)
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	운영전반	민간위탁	2008.2.28	2018.8.1. ~ 2020.12. 31. (2년 5개월)
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	운영전반	민간위탁	2012.2.1	2018.8.1. ~ 2020.12. 31. (2년 5개월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【붙임1】
 - 1)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
 - 2)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
 - 3)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1조 제2항
 - 4)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
-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액 885,718천원 【붙임2】

4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예산읍 산성공원 2길 15에 위치한 예산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예산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6. 1. 1일부터 2년 이상 현재까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,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,
- 앞으로 2018. 8. 1부터 2020. 12. 31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전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자율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다문화와 일반가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현재 충남도내 15개 시·군중 11개 시·군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과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민간위탁 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과 민간위탁 기간 동안 예산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.